

서울특별시의회
제333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
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5. 11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시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신체, 정신적 손상, 기능상실에 의해

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의사소통 장애인에 대해,

비장애인과의 동등한 활동 참여를 위한

정당한 편의를 보장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서,

□ 보완대체의사소통 구축 사업 지원 및

정당한 편의 지원 근거 마련은 물론,

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, 학부모, 관계 기관 간

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

발의하였습니다.

- 이에 안 제2조의 경우,
조례 상의 ‘정당한 편의’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8조의 경우,
시장의 책무에 명시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
구축 사업 조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.
- 마지막으로 제9조의 경우,
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
센터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
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